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7 선고 2020가단604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70,489,017원 및 그중 70,030,4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119,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7. 21.부터 2021. 7.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21. 보증금액 119,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2017. 7. 14. 보증조건 중 피보증인을 B에서 C으로, 보증금액을 107,1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하였다.

나.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19. 2.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9. 4. 10. C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70,030,479원(원금 69,492,877원 + 이자 537,602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보증에 기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으로 458,538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B와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등 합계 70,489,017원(= 대위변제금 70,030,479원 + 대지급금 458,53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0,030,479원에 대한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7. 3.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바. B은 2018. 11. 6.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위 매매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의 평택시 D 다세대주택 E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48,197,738원의 가압류채무, 원고에 대한 69,492,877원의 가압류 채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위 평택시 D 다세대주택 E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87,36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8. 11. 1.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대위변제를 하게 된 근거가 된 신용보증약정과 그에 따른 대출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2018. 11. 1.자 매매계약 후 3개월 정도 지난 2019. 2. 12.경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11. 1.자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내지 심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2018. 11.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B이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피고가 담임목사로 있는 F교회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당시 매도인도 이를 알았으므로,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18. 11.

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자금을 대부분 스스로 마련한 점, ② 더욱이 B은 2016. 1. 21.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바, 그 후인 2016. 4. 1.경에야 비로소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수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명의신탁약정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F교회 발전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 반면에, B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측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의 지번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이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2018. 11. 1.자 매매계약 당시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의 G조합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11. 1.자 매매계약 후인 2018. 12.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인 70,489,017원 및 그중 70,030,4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2018. 11.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액이 8,000만 원을 넘어서므로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자 매매계약은 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문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경환

1) 94,084,491원 = 70,489,017원 + 8,653,081원(70,030,479원 ×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3.까지 451일 ÷ 365일 × 10%) +
14,942,393원(70,030,479원 × 2020. 7. 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2. 4. 13.까지 649일 ÷ 365일 × 12%). 원 미만 버림